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. 1. 27 선고 2020가단166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0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한소희

별지